

2020.08.31.개정

정 관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보존회

(사)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보존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보존회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89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보존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의 보전과 다음세대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보존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의 전수교육사업
2. 국가무형문화재 사직대제의 공연, 전시 등 보급사업
3. 사직대제 어가행렬 재현
4. 사직대제 국내, 외 홍보 및 학술교류 사업
5.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사업 지원활동
6. 기타 보존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보존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어 가입 한다.

② 보존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회원 : 무형문화재법 제2호 제7호에 따른 종묘제례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승자” 및 전승활동에 참여하는 자
2. 특별회원 : 문화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와 보존회의 활동을 후원하는 자

3. 대의원 : 일반회원을 대표하여 제20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60인 이상 8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는 당연직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일반회원: 보존회가 수행하는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등 전승 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 특별회원: 총회에 참석하여 보존회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③ 대의원: 총회에 참석하여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보존회 활동에 관한 발언권·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보존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일반회원은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일반회원중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는 법에서 정한 전수교육의 강사로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등)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보존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회비 및 제 부담금을 3년 연속으로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보존회의 회원으로서 보존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보존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하여는 다음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명 또는 6개월 이상 자격정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전승자 인정 해제 규정에 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등 전승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보존회의 정관 또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기타 통념상 사회적 물의를 빚은 행위를 하여 보존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 ④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 앞뒤의 자격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에 이르는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징계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경위와 소명자료가 포함된 사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보존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선출하되, 보유자는 당연직 이사로 하고, 조교의 1/3이상이 임원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

1. 보존회장 1인
2. 이사 5인 ~ 10인 이내(보존회장,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포함)
3. 감사 2인(1인은 외부인사)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단, 보존회장은 사단법인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이사장을 본회 당연직회장으로 한다.

-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④ 일반회원중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감사는 2년마다 재선임하며, 중임을 할 경우에도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보존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보존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제9조 2항에 따른 징계를 받은 행위

제14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보존회장은 보존회를 대표하고 보존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존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보존회의 재산, 회계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보존회의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등 전승활동을 감사하는 일
3. 보존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보존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7.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회계검사에 협조하는 일

제16조(보존회장의 직무대행) ① 보존회장이 유고시에는 보존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보존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존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보존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보존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보존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일반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보존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보존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보존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보존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보존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6.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9. 기타 보존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보존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보존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보존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보존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보존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보존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보존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8.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 9.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보존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보존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보존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1. 기본재산은 보존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보존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1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존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보존회의 수입금은 문화재청의 전승지원금,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2조(차입금) 보존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보존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보존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사업실적 및 수지결산) 보존회는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의사록) 각급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존회장과 보존회장이 지명한 참석 이사 2명이 기명 날인하여야 하며, 차기 회의시 인준을 받는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9조(사무국) ① 보존회장의 지시를 받아 보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보존회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0조(법인해산) ① 보존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보존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존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42조(업무보고 등) ① 문화재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다.

-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 2.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3. 당해 사업연도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현황
- 4. 감사 결과보고서

- ② 보존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승인일로부터 2020년 12월 말로 한다.

제3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발기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이 태 섭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6, 타워팰리스 A-306호	
이 윤 중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7길 9	
이 종 일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143-1 수유벽산(아) 14-102호	
이 해 주		경기 양주시 남면 감악산로 466번길 95-77	
이 건 웅		서울 중구 퇴계로 217 진양(아) 2-617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종전 정관에 의한 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한 이후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2020년 8월 3일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022년 2월 말까지로 한다.

- 정관허가일자
서기 2017.04.06.
무형문화재과-1579

- 정관허가일자
서기 2020.08.31.
무형문화재과-3795